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정재·강대식

김용태 • 박대출 • 윤영석

송언석 · 김성원 · 이상휘

김선교 · 성일종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(이하 수당)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. 수당의 차등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,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,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

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(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 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의3(6・25전몰군경자녀수	제16조의3(6・25전몰군경자녀수		
당) ①・② (생 략)	당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
③ 6・25전몰군경자녀수당은	③		
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			
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		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
<단서 신설>	다만,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		
	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		
	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		
	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		